

심 사 보 고 서

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8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－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－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석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세월호 침몰사고 및 헝가리 참사 이후 수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기 설치중인 재난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복합타운 조성 사업으로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,
-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함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

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<재산의 취득>

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2. 11.
- 규 모 : 연면적 3,760m²(1개동, 지하1층 지상3층), 부지면적 7,817m²
- 사 업 비 : 13,000백만원(국비 3,000백만원, 도비 10,000백만원)

②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19. 11. ~ 2021. 2.
- 규 모 : 800m²(1개동, 지상2층), 부지면적 5,268m²
- 사 업 비 : 2,448백만원(고용보험기금 2,000백만원, 도비 448백만원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곽영학)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
- 첫째,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
 -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건축은 국비 30억원, 도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, 충청도민이 유아시절부터 생존형 수영을 습득하여 각종 수상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됨.

○ 둘째,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의 건은

- 고용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과 고용보험공단 직원의 영유아 자녀 교육을 책임짐으로써 각종 위험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」

의안번호	제 27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08일

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제 27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08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세월호 침몰사고 및 헝가리 참사 이후 수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기 설치중인 재난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생존수영 특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,
-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일선 소방관서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제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함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》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2. 11.
- 규 모 : 연면적 3,760㎡(1개동, 지하1층 지상3층), 부지면적 7,817㎡
- 사 업 비 : 13,000백만원(국비 3,000백만원, 도비 10,000백만원)

《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》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19. 11. ~ 2021. 2.
- 규 모 : 800㎡(1개동, 지상2층), 부지면적 5,268㎡
- 사 업 비 : 2,448백만원(고용보험기금 2,000백만원, 도비 448백만원)

3.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건,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매입가격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 적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2	4,560	15,448,132				
	기타			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	3,760	13,000,000	2022	국민체육센터 건립	-	신축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	800	2,448,132	2021	직장어린이집 건립	-	신축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 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</p> <p>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</p> <p>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</p> <p>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</p> <p>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</p>

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
<p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(이하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 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